



보도시점 2024. 3. 17.(일) 11:00
3. 18.(월) 조간

배포 2024. 3. 15.(금) 16:00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개식용종식법 및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현장 의견수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화) ~ '24. 5. 7. (화)
(이행계획서) '24. 2. 6. (화) ~ '24. 8. 5. (월)
-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팀	책임자	과 장	손경문 (044-201-2280)
		담당자	사무관	장래현 (044-201-228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행사 개요

- (목적) 개식용종식법 관련 지자체 이해도 제고
- (참석 대상) 광역 및 시·군·구 식용종식 관련 지자체 담당자

< 설명회 개최 일정 >

권역	일시	장소
1차(충청)	3.21(목) 14:00	청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2차(전라)	3.25(월) 14:00	전남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101호)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3차(경상)	3.26(화) 14:00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대강당(3층)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30)
4차(강원)	3.27(수) 14:00	횡성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5차(경기)	4.1(월) 14:00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4층 대회의실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주요 내용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개식용종식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가이드라인 설명

□ 세부 일정(안)

시간	내용
14:00 ~ 14:05 (5')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14:05 ~ 14:25 (20')	○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설명
14:25 ~ 15:00 (35')	○ 개식용종식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15:00 ~ 15:30 (30')	○ 질의 응답 및 답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26.)

□ **법 공포 즉시 시행(“24.2.6.~)**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입·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8조(과태료) 등

-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살·처리 및 식품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 금지
- (영업 신고) 개 식용 목적 농장 및 영업장은 시설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24.2.6. ~ 5.7.) 시군구에 신고
- (이행계획서 제출) 영업을 신고한 농장 및 영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 후 6개월 내(“24.2.6. ~ 8.5.) 시군구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
- (출입·조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 출입 실태조사 및 관계 서류 검사 가능
 - 실태조사,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수리, 종식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 (이행조치 명령) 시·군·구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농장·영업장 대상 이행조치, 폐쇄 명령 등 가능
- (과태료) 신규 운영 금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출입·조사 거부·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24.8.5.~)**

* 제6조(기본계획), 제8조(위원회), 제11조(폐업 등 지원), 제12조(전업 지원) 등

- (전·폐업 지원 등)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영업장 대상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과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 (기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 **법 공포 후 3년 경과 이후 시행(“27.2.5.~)**

* 제5조(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제17조(벌칙)

- 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